

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

| | | |
|------|------|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3일 |
| 신청인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
| | 주소 | (전화번호:) |
| 자격증 | 종류 | 번호 |
| | 발행처 | 발행일자 |

「축산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
귀하

| | |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서류 | 1. 「축산법」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1부 2. 「축산법」 제12조제2항제2호·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| 수수료 (수입증지) 6,000원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
유의사항

- 자격증란은 해당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「축산법」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.
- 제출서류로 내는 건강진단서에는 신청인이 「축산법」 제12조제2항제2호·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 있어야 합니다.